

서울고등법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20914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고, 항소인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한 저작권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2 내지 5, 12, 14, 19, 22, 3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전다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경희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였고, 공연기획사인 ‘비바츠예술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2008. 8. 무렵부터 발레 등 각종 공연을 기획·공연하고 있다.

2)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한●발레아카데미’라는 상호로 발레학원(이하 ‘이 사건 발레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발레 작품 제작 및 공연

1) 원고는 2011. 8. 무렵 IT 국악밴드인 ‘카타(KATA)’의 국악 연주와 발레가 어우러

지는 ‘발레와 빛의 소리’라는 제목의 발레 작품(이하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이라 한다)을 제작하기로 하고, 2012. 2. 무렵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안무 및 무용수 지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하고 무용수를 지도하는 등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공연준비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을 처음으로 공연하면서 그 공연 브로셔에 예술감독을 원고로, 안무가를 피고로 표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4. 무렵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 제작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외계층을 위한 발레 작품으로서 “발레로 듣는 이야기 ‘나무’ The Tree”라는 제목의 작품(이하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과 통칭하여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라 한다)도 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공연준비를 하였다.

4) 원고는 2012. 6. 28.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을 처음으로 공연하면서 그 공연 브로셔에 대표·단장을 원고로, 예술감독 및 안무가를 피고로 표시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

1) 피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초연 때부터 2014년 무렵까지 이 사건 발레작품들의 공연에 참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5년 무렵 피고의 동의 없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에 대한 공연신청을 하여 그 공연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수원시 등지에서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을 공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안무를 담당한 피고

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을 공연하는 것은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등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통지한 후, 2015. 6. 2.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종합예술인 발레 작품은 동작, 조명, 음악, 무대, 줄거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결과물인데,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연출하는 예술총감독인 원고가 안무자인 피고에게 각 막 별로 안무 의도 및 표현 형식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안무가 겸 무용수 지도자의 지위에서 음악에 맞는 안무 초안을 짜고 무용수들과 함께 원고 앞에서 시연한 후 원고가 그중 변경할 부분과 배제할 부분을 지적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을 하여 원고가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은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구성의 변경 및 결정을 원고가 한 이상 창작적 표현 방식으로서의 무용 부분은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부분을 변형한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역시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저작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가 예술총감독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기획·연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구성하는 무용, 음악 등은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무용 부분을 창작한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다룬다.

[판단]

1)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발레를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

적인 저작자로 취급된다. 그리고 발레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발레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발레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제작자라도 그가 발레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발레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모두 그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 소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별도로 그 각각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하여 발레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발레의 연출자는 해당 발레에 참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3, 19, 21, 22, 24에서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다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제작을 기획하여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을 제외한 음악이나 무대미술 부분 등이 원고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인 비바츠예술매니지먼트 소속 단원이었던 권수진, 염은미에게 선곡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에 사용될 음악을 결정하였고(2016. 10. 25.자 준비서면), 피고가 섭외한 무대감독과 조명감독이 제시한 건적

서에 따른 비용을 결제하는 등 각 분야의 감독들을 총괄하여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을 기획·연출하였다(2016. 10. 20.자 준비서면)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접 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연출자로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권접권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까지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저작권법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단순히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가 저작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모두 창작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물을 작성함에 창작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할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발레와 같은 무용저작물에 있어서 안무란 안무가가 음악에 맞추어 기존에 알려진 여러 동작들을 조합·구성하고 실연자의 배치 등을 구상하여 동작의 흐름을 창안하는 것으로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

합·배열한 ‘동작의 형(型)’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안무를 담당하였고 원고가 피고가 담당한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갑 제9, 1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다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 8, 10, 12, 14, 15, 16, 21 내지 28,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다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공연하기에 앞서 2012. 3. 무렵부터 2012. 5. 무렵까지 약 2달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발레학원에서 자신이 제작한 안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서 공연할 무용수들을 지도하면서 공연연습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무노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공연연습기간 중 공연연습장소를 방문한 적도 있으나 공연연습 때마다 매번 방문한 것은 아니고, 원고는 공연연습 도중에 방문하여 무용수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공연연습 과정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무용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무용 지도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안무와 관련하여 무용수들의 등장 위치와 동작의 타이밍, 무용수들의 시선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수정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피고에게 작품의 콘셉트에 맞게 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④ 원고는 비바츠예술메니지먼트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발레 작품들과는

별도로 공연한 “발레콘서트 ‘더 아리랑’”이라는 작품의 공연설명서에 원고를 비바츠에
술매니지먼트의 대표 및 안무가로 표시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공연
브로셔에는 원고를 예술감독으로, 피고를 안무가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
의 공연 브로셔에는 원고를 대표·단장으로, 피고를 예술감독 및 안무가로 표시하였을
뿐, 원고를 이 사건 각 발레 작품들의 안무가 또는 공동안무가로 표시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출연한 발레리나인 전다영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
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전체적인 구상, 기획, 연출 등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안무를 담당하고 출연 무용수들에게 무용 연습을 시킨 것은 피고였으며, 다
만 원고가 공연연습이나 리허설 과정에서 피고가 담당할 안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
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동작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증
언하였고,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출연한 일부 다른 무용수들 역시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비록 피고가 무용 부분에 한정하여 저작
권등록을 마친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에 대하여
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마쳤으나, 설
령 피고를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 중 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창작자
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원고를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창작자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 중 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저작권등록의 말소를 구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이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의 저작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은 피고가 원고의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저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공연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공연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사이였을 뿐,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다룬다.

[판단]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즉 법인 등과 실제 저작자 사이에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2012. 3. 무렵부터 2013. 5. 무렵까지의 피고에 대한 월 급여가 기본급과 식대보조금을 합하여 매월 1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2.부터 2013. 5. 16.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43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11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여러 번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012. 6. 무렵부터 2013. 5. 무렵까지 피고의 이른바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가 비바츠예술 매니지먼트 및 비바츠발레앙상블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 2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다영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피용자로서 또는 원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안무를 담당한 이 사건 각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이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2012. 3. 22.부터 2013. 5. 16.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에게 월 급여로 각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2015. 11. 23.자 준비서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12. 3. 22.부터 2013. 1. 3.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월 급여로 각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월 급여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던 2012. 11. 10.자 및 2013. 5. 16.자 지급내역은 피고의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공연 출연료, 이 사건 발레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연습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출된 연습실 사용료,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공연 시 피고가 무용수들을 관리·지도한 것에 대한 감독비,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공연시 피고가 무대의상이나 무대장치를 조달한 경우의 그 조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가 피고를 고용한 기간이나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지급내역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실제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1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② 더욱이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3.까지만 피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2012. 3. 무렵부터 2013. 5. 무렵까지 피고에게 월 급여로 11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작성한 위 급여대장은 추후에 이 사건 작품들 공연과 관련한 회계처리·세금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원고는 공연기획사인 비바츠예술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공연을 섭외하여 그 공연 일정이 잡히면 피고가 무용수와 스텝진을 구성하여 공연을 한 후 원·피고 사이에 그 비용과 수익 등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공연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이른바 4대 보험료도 원·피고 사이의 정산에 반영되고, 피고가 대외활동을 위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명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공연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그 안무를 의뢰한 것일 뿐, 그 외에 피고에게 원고가 공연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이던 다른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 작업이나 공연연습을 할 것을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를 하고 공연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레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연습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에 피고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주었을 뿐이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발레학원에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를 하고 무용수들을 지도하면서 공연연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중에도 이 사건 발레학원을 계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아들에게 발레 레슨을 해주고 원고로부터 그 레슨비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안무 및 공연연습 이외의 업무를 해왔는바(원고 역시 피고가 가용한 시간을 활용하여 피고를 위한 작품 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고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⑥ 원·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가 없고, 원·피고가 2014년 무렵 더 이상 공연 업무를 같이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퇴직금 지급 등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윤형